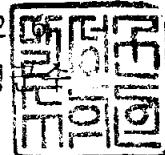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15
------------	-----

제출일자 : 2012

제출자 : 달성군



##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아동과 여성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연계, 자원·정보 교류 등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추진 및 점검
-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위기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
-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 나. 지역연대의 구성(안 제8조)

-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부군수), 부위원장(호선)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2. 5. 21 ~ 2012. 6. 11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이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군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여성폭력 관련시설 및 아동보호관련 기관

2. 청소년시설 및 가족지원시설

3.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 관련 기관

4. 그 밖에 아동·여성보호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의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 또는 시설은 법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실비보상) 군수는 지역연대 기능수행 및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